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상설운영에서 비상설운영으로 변경하여  
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삭제,  
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
- 나.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'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'(이하  
"충전시설")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계속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 
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요금의 결정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,  
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충전종료 후 빠른 출차를  
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충전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충전종료 후 충전시설을 계속 점거하는 요금을 말하는 용어로  
'충전시설 점거 사용료'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11호)
- 나.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에서 충전시설 점거 사용 요금 결정에  
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8조제1항)
- 다.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 
자동해산으로 변경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  
(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)

- 라. 당연직 위원을 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(안 제8조제2항제1호)
- 마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을 삭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변경(안 제8조제4항)
- 바. 서울특별시 소유 충전시설의 이용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)
- 사.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제2호)
- 아. 그 밖에 자구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일부반영)

개선의견	반영사항
충전시설 점거사용료 산출기준 규정 신설	반영 (제8조제3항)
이해 충돌 발생시 해촉 규정 필요	미반영
부과징수 처리절차 및 과오납, 이의제기 등 처리규정 필요	반영 (제8조제4항)
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 
검토의견: 해당없음

## 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'24. 8. 16. ~ 9. 5.) 결과: 의견있음(미반영)

※ (의견내용) 충전 완료시 차다가 새벽이라도 나가서 충전기를 빼야한다면 불편해서 전기차 구매가 떨어질 것이며, 과충전이 배터리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점거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에 반대함

※ (미반영 사유) 충전시설 점거사용료는 과충전 방지나 화재 예방 대책이 아닌 '충전완료 후 빠른 출차 유도를 통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자' 관련 조문이 신설되는 사항임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차진경 (☎2133-4408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본문 중 “공용차량”을 “공무용차량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“충전시설 점거 사용료”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충전시설 사용요금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출자·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출자·출연 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 기관”으로, “공용차량”을 “공무용차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출자·출연 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환경친화적자동차”를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9조) 제1항 중 “충전료 산출”을 “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산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
제8조(중전의 제9조) 제2항제1호 중 “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”을 “위원회 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”를 “위원회 회의는”으로, “개의하고”를 “개최하고”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의 제목 “(충전료 징수)”를 “(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사람”을 “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(단,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)에서 정한다. 다만 충전종료 후 15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

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충전료 등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7조에 따른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환경친화적자동차”를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로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충전료”를 “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서울특별시 <u>공용차량</u>”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,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(임차차량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</p> <p>5. ~ 10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</p> <p>① 시장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출자·출연기관</u>(이하 “출자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공무용차량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“<u>충전시설 점거 사용료</u>”란 <u>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충전시설 사용요금을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출자·출연 기관</u>(이하 “출자</p>

·출연기관“이라 한다)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조에서 “구매“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~ ③ (생략)

④ 시장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제8조(충전료 징수)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신 설>

·출연 기관”-----

----- 공무용차량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출자·출연 기관 -----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환경친화적 자동차-----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) ① -----

----- 자-----

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(충전료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<단서 신설>

않는 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(단,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)에 서 정한다. 다만 충전종료 후 15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충전료 등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7조에 따른다.

제8조(충전료심의위원회) ① ---  
---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 
사용료 산출 -----  
-----  
-----  
--.다만,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

2. (생략)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·⑥ (생략)

제10조(홍보 및 교육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

2.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-----  
-----  
----- 개최하고 -----  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홍보 및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환경친화적 자동차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
3. (생략)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충전료 및 충전 시설 점검 사용료 -----
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: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차진경(☎2133-4408)